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2,592,533,977 | 77,776,019 |
| 일반회계 | 2,262,175,230 | 67,865,257 |
| 특별회계 | 330,358,747 | 9,910,762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58,348,244 | 7,750,447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35,817,089 | 4,074,513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22,531,155 | 3,675,935 |
| 기타특별회계 | 72,010,503 | 2,160,315 |
| 교통사업 특별회계 | 26,405,868 | 792,176 |
|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| 1,772,086 | 53,163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| 3,355,964 | 100,679 |
| 대지보상 특별회계 | 655,000 | 19,650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105 | 3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9,434,289 | 283,029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10,320,331 | 309,610 |
| 균형발전특별회계 | 20,066,860 | 602,006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229,72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